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“경력단절여성”이라는 표현을 “경력보유여성”으로 변경함(안 제24조 제5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